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보 훈 보 상 대 상 자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재해사망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연동하여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및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09. ~ 1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161만4천원”을 “166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1만6천원”을 “11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68만원”을 “70만원”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

1.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2,216	5급	1,155
1급 2항	2,090	6급 1항	1,055
1급 3항	2,000	6급 2항	971
2급	1,778	6급 3항	651
3급	1,662	7급	348
4급	1,395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월 지급액(천원)
가.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1) 배우자	1,168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354
3) 부모 또는 조부모	1,147
나.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1,013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175
3) 부모 또는 조부모	996
다.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371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537
3) 부모 또는 조부모	353

비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3]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15조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족이 1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8만3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5만2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2만원 2. 가족이 2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8만3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5만2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2만원 3.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33만6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30만5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7만3천원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용”이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 (천원)
1. 상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介護)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631
2. 수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9호에 따른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75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생략)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u>161만4천원</u>	1. ----- ----- <u>166만2천원</u>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u>111만6천원</u>	2. ----- ----- <u>115만원</u>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u>68만원</u>	3. ----- ----- <u>70만원</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